

자동계좌이체 신.구약관 비교표

| 현 행 | 개 정(안) | 비 고 |
|---|--|--|
| <p>제1조 ~ 7조 (생략) 제8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의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 ~ 14조(생략) 제15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편뱅킹/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입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payinfo.or.kr)에서 출금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p> | <p>제1조 ~ 7조 (좌동) 제8조 자동이체 신청 은행은 자동이체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리 납부자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은행이 납부자로부터 서면 또는 전자금융을 통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받는 방법 2. 이용기관이 납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은행에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자동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제9조 ~ 14조(생략) 제15조 계좌이동서비스 ① 지로/편뱅킹/금결원CMS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은행은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제공하여 조회 및 해지,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③ 납부자는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계좌이동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자가 은행 지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당행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타은행 출금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당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 됩니다.</p> | <p>공인인증서는 금융위원회의 회정책에 따라 의무사용이 폐지되고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대체</p> <p>부연설명 추가</p> |

